

[사 건 명] 행심 2018 - 1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학교에서의 봉사 3일 등』 처분 취소
청구

□ 청구인 : ◇◇◇

□ 피청구인 : ○○중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12.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학교에서의 봉사 3일 등』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1. 사건 개요

가. ㉹㉹㉹의 부모가 2017. 11. 28. ㉹㉹㉹의 다른 학교폭력 사건으로
학교를 방문하였을 때 청구인 ◇◇◇(이하 ‘청구인’ 이라고 한
다)가 ㉹㉹㉹의 부모에게 “㉹㉹㉹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라고 말
을 하였다. 이에 ㉹㉹㉹의 부모는 청구인이 ㉹㉹㉹의 부모에게 위
와 같이 말한 사실을 ㉹㉹㉹에게 전하자, ㉹㉹㉹은 2017. 11. 29.
청구인의 교실에 찾아와 청구인이 ㉹㉹㉹의 부모에게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따지면서 청구인과 다툼을 하였
다.

- 나. ㉹㉹㉹과 그의 친구들은 2017. 12. 02. 청구인의 선배인 ㉹ 하면서 청구인에게 ‘㉹㉹㉹과 화해시켜주겠다’ 며 문자를 보내 청구인을 불러내었다. 청구인이 약속장소로 나가자 ㉹㉹㉹의 친구는 ㉹㉹㉹과 청구인을 싸우도록 하였으며 이어서 ㉹㉹㉹과 청구인이 싸우는 장면 및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피 흘리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7. 12. 05. ㉹㉹㉹이 위와 같이 촬영한 피 묻은 청구인의 사진을 다른 학생들에게 보여주며 청구인을 혼내줬다고 말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학교폭력신고를 하였다.
- 라. ㉹㉹중학교장(이하 ‘피청구인’ 이라고 한다)은 2017. 12. 2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에게 『학교에서의 봉사 3일, 학생 및 학부모 부가적 특별교육 4시간』 가해 처분 조치(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 가. ㉹㉹㉹과 청구인 둘 다 가해학생으로 처분을 받았으나, ㉹㉹㉹과 그의 친구들이 청구인에게 싸움을 제의할 때 청구인은 ㉹㉹㉹ 및 ㉹㉹㉹의 친구들 다수의 종용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위 제의를 받아들여지게 되었으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 나. ㉹㉹㉹ 및 그의 친구들이 동영상을 촬영하고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여 청구인의 학교생활이 불안한 상태임에도 피해자인 청구인에게 가해자 처분이 내려져 또 다른 상처를 입었으며 이는 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 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피해자로써의 성격이 강하지만 청구인의 행위도 쌍방폭행임을 설명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었다.
- 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가해학생 선도조치 기준에 따라 학교폭력의 심각성은 낮음, 지속성은 없음, 고의성은 낮음, 반성정도는 매우 높음, 화해정도는 낮음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내리게 되었다.
- 다. 폭력의 수위는 차이가 있으나 청구인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이 아닌 일부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어 가해자로써의 선도 조치를 하게 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나. 판 단

1) 인정되는 기초 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증거자

료, 청구인 및 피청구인에 대한 구술심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청구인은 같은 동급생 학생보다 지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학교에서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일반 학생보다 좀 더 보호해야 할 학생이다.
- 나) ㉸㉸㉸의 부모가 2017. 11. 28. ㉸㉸㉸의 다른 학교폭력 사건으로 학교를 방문하였을 때 청구인이 ㉸㉸㉸의 부모에게 “㉸㉸㉸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의 부모는 청구인이 ㉸㉸㉸의 부모에게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을 ㉸㉸㉸에게 전하자, ㉸㉸㉸은 2017. 11. 29. 청구인의 교실에 찾아와 청구인이 ㉸㉸㉸의 부모에게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을 이유로 청구인과 말다툼을 하였다.
- 다) 청구인과의 위 일을 마음에 담고 있던 ㉸㉸㉸은 ㉸㉸㉸의 친구들인 ○○○중학교 학생 △△△, ⊙⊙⊙, ▣▣▣에게 청구인을 잡자고 제안을 하였다. 이에 ㉸㉸㉸은 2017. 12. 02. 청구인에게 나오라고 하였는데 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자, 위 ▣▣▣이 청구인의 선배인 척 하면서 청구인에게 ‘㉸㉸㉸과 화해시켜주겠다’ 라고면서 청구인을 나오도록 하였고 청구인은 위 제안에 응하여 건지사거리 인근 다이소 가게 앞으로 나갔다.
- 라) 청구인이 위 약속장소로 나가자 ㉸㉸㉸의 친구들이 청구인에게 “왜 ㉸㉸㉸ 부모님께 이야기 하였냐” 며 청구인을 질책하자, 청구인이 사과하였는데 위 ㉸㉸㉸의 친구들이 청구인에게 “미안하면 꿇어” 라고 이야기를 하자 청구인은 무릎을 꿇고 사과하였다.

- 마) 이때 ㉸㉸㉸의 친구 ㉸㉸㉸은 ㉸㉸㉸과 청구인에게 싸움을 부추겼으며 이에 ㉸㉸㉸은 청구인의 얼굴을 먼저 때려 싸움이 시작되었다. 위와 같이 싸움이 시작되자 ㉸㉸㉸은 ㉸㉸㉸과 청구인의 싸우는 모습을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위 싸움은 지나가던 한 어른의 중재로 중단되었다.
- 바) 장소를 옮겨 ㉸㉸㉸은 청구인에게 자신과 넘어뜨리기를 해서 이기면 싸움을 멈추겠다고 제안하여 청구인과 ㉸㉸㉸은 서로 넘어뜨리기를 하였고 위 장면을 ㉸㉸㉸이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그런데 둘 다 넘어지지 않아 넘어뜨리기가 끝나자 ㉸㉸㉸의 친구들은 ㉸㉸㉸과 청구인이 다시 싸우도록 하였으며 이에 ㉸㉸㉸은 먼저 달려들어 청구인의 얼굴을 주먹과 무릎으로 가격하였고 이때 청구인의 코피가 흘렀다.
- 사) 청구인은 ㉸㉸㉸으로 인하여 코피를 흘리고 뇌진탕 등의 진단을 받았다.
- 아) ㉸㉸㉸은 청구인의 코피 흘리는 사진을 찍고 만일 청구인이 위와 같이 싸운 일을 신고하면 사진과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리겠다고 청구인을 위협 하였다.
- 자) ㉸㉸㉸은 2017. 12. 3.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하여 ㉸㉸중학교 2학년 ㉸㉸㉸에게 청구인이 코피 흘리는 사진을 전송하였고, 다음날인 12. 4.에 ㉸㉸㉸, ㉸㉸㉸ 등 다수에게 휴대전화기로 사진을 보여주며 청구인을 혼내주었다고 다녔다.
- 차) 청구인은 2017. 12. 05. ㉸㉸㉸이 위와 같이 촬영한 피 묻은 청

청구인의 사진을 다른 학생들에게 보여주며 청구인을 혼내줬다고 말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학교폭력신고를 하였다.

카) 피청구인은 2017. 12. 2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에게 『학교에서의 봉사 3일, 학생 및 학부모 부가적 특별교육 4시간』 가해 처분 조치를 하고 동시에 피해학생으로 조치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 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의 발단에 있어서 청구인의 행동이 일부 원인을 제공한 부분이 존재하고, 폭력의 수위는 차이가 있으나 청구인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이 아닌 일부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으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청구인에게 쌍방폭행임을 설명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 청구인을 싸움의 장소로 불러내었으나 청구인이 처음에 이를 거절하였던 점, ■■■■의 친구 ■■■■이 청구인의 선배인 척 하면서 청구인에게 ‘■■■■과 화해시켜 주겠다’ 라면서 청구인을 나오도록 유인하였던 점, ■■■■ 및 ■■■■의 친구 다수 앞에서 청구인이 무릎까지 꿇고 사과를 하였음에도 ■■■■ 및 그 친구들은 싸움을 중용한 점, ■■■■이 먼저 청구인을 가격한 점, 그로 인하여 청구인은 코피를 흘리고 뇌진탕의 상해를 입은 점, 이에 반하여 ■■■■의 피해는 거의 없는 점, ■■■■ 및 그 친구들은 위 싸우는 모습을 촬영하여 청구인을 협박한 점, ■■■■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참석하여서도 반성을 하고 있지 않는 점, 청구인은 같은 동급생 학생보다 지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학교에서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일반 학생보

다 좀 더 보호해야 필요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청구인의 행위가 ㉸㉸㉸에 대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가해자 ㉸㉸㉸과 ㉸㉸㉸의 친구 다수의 종용에 의해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혼자였던 청구인이 이러한 상황을 회피하기에는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 판단되며 ㉸㉸㉸과 그의 친구들이 동영상까지 촬영하며 청구인을 협박한 것은 매우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의 친구들 앞에서 ㉸㉸㉸에게 폭행 및 상해를 당하고 재차 그 당시의 피해 사진을 유포당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은 점이 인정되므로 단순한 관점에서 ㉸㉸㉸에 대항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청구인의 행위를 위법성 있는 폭행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청구인이 ㉸㉸㉸에게 대항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점만으로 청구인에 대한 가해학생 선도조치인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